

제20회 한국세무포럼

신택세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일 시 : 2022. 5. 18.(수) 14:00

장 소 :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



개회사 원경희(한국세무사회 회장)

발 표 이전오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좌 장 김완석 석좌교수(강남대)

토 론 손영철 세무사
김병일 교수(강남대)

진행 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및 안내
14:00-14:05	(개 회)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14:05-14:45	좌 장 김완석 석좌교수 (강남대) 주 제 신탁세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 발 제 이진오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14:45-15:15	지정토론 손영철 세무사 김병일 교수 (강남대),
15:15-15:30	자유토론
15:30-15:35	(폐 회)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 주 제 : 신탁세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

I. 신탁세제의 개정 배경	10
II. 신탁세제의 설계 · 운영시 고려사항	12
III. 신탁세제의 기본이론	14
IV. 신탁 관련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19
V.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25
VI.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30
VII. 결론	36
토론문 손영철 세무사	37
토론문 김병일 교수	44

주 제

신탁세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

| 주제발표자 | 이 전 오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탁세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

| 이전오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목 차

- I. 신탁세제의 개정 배경
- II. 신탁세제의 설계운영시 고려사항
- III. 신탁세제의 기본이론
- IV. 신탁 관련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 V.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 VI.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 VII. 결론

I. 신탁세제의 개정 배경

□ 신탁이라는 제도는 본래 영미에서 탄생한 것이지만, 오늘날은 대륙법계 국가에도 널리 퍼져있고 우리나라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음.

○ 우리나라에서 신탁법이 제정된 것은 1961년이고, 그동안에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상사신탁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음.

○ 현재 은행·증권사·보험회사·부동산신탁회사 등 총 60개의 인가받은 신탁업자가 있고, 신탁산업의 전체 수탁고가 1,200조원을 넘을 정도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

I. 신탁세제의 개정 배경

□ 한편, 1961년 제정된 이래 수십년간의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며, 아울러, 신탁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탁법의 제정 이후 50년만인 2011. 7. 25.에 신탁법의 전면개정(시행은 2012. 7. 26.부터)이 있었음.

○ 이 때,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구체화, 수탁자의 의무 강화,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구체화,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도입,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발행신탁, 사업신탁,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음.

4

I. 신탁세제의 개정 배경

□ 신탁법의 전면개정을 계기로 하여 신탁산업은 앞으로 계속하여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유언대용 신탁이나 수익자연속 신탁 등의 이른바 가족신탁이 상속을 대체하거나 가업승계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한편, 신탁이라는 제도는 필연적으로 조세제도와 관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2011년에 신탁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때에 신탁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였음.

○ 일본의 경우, 1922년에 제정된 신탁법을 84년이 지난 2006. 12. 15.에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이른바 「신신탁법」, 2007. 9. 30.부터 시행) 신탁세제에 대한 정비작업을 동시에 하였음.

5

I. 신탁세제의 개정 배경

□ 이에, 그간에 신탁업계로부터 신탁세제의 불확실성을 정비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

○ 과세당국이 언제, 어떻게 과세할지 몰라 불안한 상태였음.

□ 정부는 2019년 7월 ~ 2020년 6월에 걸친 1년 동안의 연구·준비과정을 거쳐서 2020년 정기국회에 신탁세제에 관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그리하여, 소득세법(2020. 12. 29. 개정, 2021. 1. 1. 시행), 법인세법(2020. 12. 22. 개정, 2021. 1. 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개정, 2021. 1. 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개정, 2022. 1. 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개정, 2021. 1. 1. 시행), 지방세법(2020. 12. 29. 개정, 2021. 1. 1. 시행) 중 신탁 관련 부분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신탁세제를 대폭 정비하였음.

□ 아래에서는 2020년 개정 전의 신탁세제를 「개정 전 신탁세제」로, 그 이후의 신탁세제를 「개정 후 신탁세제」로 부르기로 함.

6

II. 신탁세제의 설계운영시 고려사항

1. 사법(私法)과 조세법 사이의 관계 설정 내지 조화 문제

가. 사법상의 법률상 소유자(수탁자)와 신탁세제상 납세의무자의 일치 여부
⇒ 일치할 필요 없음

나. 원본과 과실의 관계

□ 사법상으로는 원본의 권리자와 과실의 권리자가 일치함 ⇒ stock과 flow의 일치
예:

○ 민법상 원물(元物)의 소유자는 과실(果實)에 관한 권리를 가짐.

○ 상법상 주식 그 자체에 대한 권리로부터 배당수취권만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함.

□ 신탁법 및 신탁세제에서는 원본 수익권과 수익 수익권(수입 수익권)이 분리됨 ⇒ stock과 flow의 분리

7

II. 신탁세제의 설계운영시 고려사항

2. 각 稅目(세목)상 납세의무자의 일치 여부

□ 신탁세제를 설계하면서 각 세목의 납세의무자를 일치시킬 것인가?

○ 예컨대, 신탁 관련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수익자로 한다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도 수익자로 하여야 하는가?

○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이라는 담세력에 과세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거래행위)을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본질에 차이가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를 신탁세제에서도 반영하여야 하는가?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달리할 것인가? 아니면 일치시킬 것인가?

8

II. 신탁세제의 설계운영시 고려사항

3. 신탁세제의 기능

□ 신탁세제는 신탁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하고 그 발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되지만, 그렇다고 신탁이라는 scheme이 조세회피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금융거래의 다양화와 새로운 금융기법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신탁 형태의 vehicle을 이용한 상사신탁업은 더욱 번창할 것이고, 가족생활의 변화에 따라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 등의 가족신탁도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이와 관련하여, 분명하고 합리적인 신탁세제를 마련함으로써 조세제도가 신탁업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겠지만, 신탁세제를 설계운영할 때에는 지나친 과세이연이나 조세회피의 방지라는 측면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9

II. 신탁세제의 설계운영시 고려사항

4. 이상(원칙)과 현실(관행) 간의 균형

□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바람직한 제도란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올바른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함. 그러나, 현실과 이상의 조화가 쉽지 않음.

□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은 물론이고, 신탁을 설정한 후에도 위탁자가 여전히 신탁재산에 관한 통제권을 가지는 이른바 위탁자 신탁이 대부분임.

□ 이런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탁세제를 설계 내지 개편하기는 어렵겠지만, 한편 이런 현실이 신탁 본연의 모습에 부응하는 것인지, 나아가 global standard나 우리 신탁제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지는 매우 의문임.

□ 신탁세제의 설계운영시에, 이런 현실과 이상 간의 조화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가 큰 과제임.

10

III. 신탁세제의 기본이론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론에는 전통적으로 신탁실체론(信託實體論)과 신탁도관론(信託導管論)이라는 두 가지 이론이 대립함.

I. 신탁실체론(信託實體論)

1. 의의

가. 신탁실체론은 신탁이 마치 법인처럼 그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신탁 자체에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임.

나. 신탁실체론은 다시, 신탁재산이 아닌 수탁자를 과세주체로 하여 신탁세제 이론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견해(수탁자 과세주체설)와 신탁재산 자체를 과세주체로 인정하여 신탁세제 이론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견해(신탁재산 과세주체설)로 나뉨.

○ 전자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완전하게 귀속된다는 신탁행위에 관한 채권설의 영향을 받은 견해이고, 후자는 신탁재산이 독립된 법주체라는 입장을 취하는 실질적 법주체설의 영향을 받은 견해임. 이 두 가지 견해는, 신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된 독립적 실체로 본다는 점에서는 결론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이론적으로는 후자가 신탁실체론에 더 부합하는 주장임.

11

III. 신탁세제의 기본이론

다. 신탁실체론을 취하는 논자들은 신탁재산이 독립된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 그리하여, 신탁소득이 최종적인 귀속자인 수익자에게 귀속되기까지는 일단 여러 가지 형태의 소득이 독립된 사회적 및 경제적 제도로서의 풀(pool)인 신탁재산에 혼입되었다가, 일정기간 후에 신탁이익이라는 하나의 과세소득으로 여과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생각함.

라. 신탁실체론에 따르면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과세상 주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수익자가 신탁회사로부터 받은 신탁이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이 되고, 과세시기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신탁수익을 분배받을 때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됨. 이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신탁보수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수익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마. 신탁실체론을 관철하려면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서 소득을 지급받는 때와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배당을 받을 때에 모두 과세해야 하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게 됨.

12

III. 신탁세제의 기본이론

2. 신탁실체론의 논거

- ① 신탁재산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다.
- ②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모든 수익과 지출은 외형상으로도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 ③ 외부에 나타나는 법적 형식에 따른 과세이기 때문에 실체이론에 의하면 과세가 간명하게 된다.
- ④ 신탁에 대해 인격을 부여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신탁법이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 ⑤ 수익자가 부존재하거나 미지정된 경우 및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신탁소득을 장기간 수익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제도의 취지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신탁과세이론에 신탁실체론을 가미하여 신탁을 하나의 권리주체로 보아서 신탁을 납세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3

III. 신탁세제의 기본이론

3. 신탁실체론에 대한 비판

- 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 ② 신탁재산과 법인은 최종적인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을 분배하기 위한 도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본질이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으나 신탁재산에게는 별도의 법인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론 구성을 하는 것은 현재의 법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
- ③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수탁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실체론은 과세의 단순화를 도모할 수 있지만, 납세자들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탁을 이용할 수 있어 조세탈루를 조장할 수 있다.
- ④ 신탁을 별도의 실체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신탁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다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 등과 같은 조정장치를 도입한다면 세제가 복잡하게 된다.

14

III. 신탁세제의 기본이론

II. 신탁도관론(信託導管論)

1. 의의

가. 신탁도관론은 신탁재산을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하지 않고 신탁을 단순히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관으로 보아서, 신탁 자체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득이 귀속되는 수익자 단계에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견해임.

나. 신탁도관론은 신탁이 없는 것처럼 간주하여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신탁재산 운용내용 별로 소득을 구분하고, 신탁재산에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제3자(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다. 신탁도관론에 의하면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므로,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되는 때가 수익자의 소득 귀속시기임.

15

III. 신탁세제의 기본이론

2. 신탁도관론에 대한 비판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이나 지출이 즉시 수익자에게 분배되지 않고 일단 신탁재산에 머물렀다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에 수익자에게 지급됨에 따라 과세상의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② 금전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신탁재산에 소득이 발생, 지급되는 측면을 설명할 수 없다.

③ 신탁을 왜 법인과 차별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

④ 신탁도관론에 따르면 신탁유형에 따라 발생한 법률관계를 토대로 각 유형별로 과세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세방법은 다양한 경제상황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신탁유형이 출현될 경우에 이를 세법에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⑤ 신탁계약이 1인의 수익자와 1인의 수탁자로 구성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다수의 수익자와 1인의 수탁자로 신탁계약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도관이론에 의한 과세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6

III. 신탁세제의 기본이론

III. 검토

1. 견해 대립의 실익

신탁도관론과 신탁실체론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신탁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에서 여러 가지 차이를 발생시킴.

가.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1) 신탁도관론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처분하는 것으로 봄. 따라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소득원천설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의 범위가 결정되고,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의 범위가 결정됨.

(2) 반면에, 신탁실체론은 신탁재산을 하나의 실체로 봄으로써 그 실체에 귀속되는 모든 손익이 법인의 경우처럼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합산되어 과세됨.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미실현손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됨.

17

III. 신탁세제의 기본이론

나. 소득 구분

(1) 신탁도관론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취급하므로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하게 되고, 따라서 여러 종류의 소득으로 과세됨.

(2) 그에 비하여, 신탁실체이론은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이 법인의 경우처럼 통산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즉, 당초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통산되어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소득유형이 변환되는 결과가 됨.

다. 원천징수시기 또는 소득의 수입시기

(1) 신탁도관이론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되는 때를 수익자의 수입시기로 봄.

(2) 반면에, 신탁실체론은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될 때가 아니라 환매나 이익분배를 통하여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자에게 소득이 귀속될 때를 수익자의 수입시기로 봄. 18

III. 신탁세제의 기본이론

2. 결어

가. 위에서 본 것처럼, 신탁실체론과 신탁도관론은 단순히 이론적인 대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취급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현행 세법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내지 입법론적으로 우리 세법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실익이 있음.

나. 입법론으로 신탁실체론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지만, 현행 세법은 신탁도관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19

III. 신탁세제의 기본이론

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증여세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인세만큼 분명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신탁도관설을 따르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33조 참조.

라. 현행 세법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수탁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은 신탁실체설(수탁자 과세주체설)을 따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 12. 22., 2021. 12. 8.>

20

IV. 신탁 관련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1. 개정 전 소득세 및 법인세 신탁세제

가. 개정 전 소득세 및 법인세 신탁세제

(1) 신탁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과세, 예외적으로 위탁자에게 과세

○ 위탁자 과세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신탁을 도관으로 간주하여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나. 개정 전 신탁세제의 문제점

(1) 신탁소득 과세방식이 획일적이어서 신탁제도 활성화 저해

(2)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

(3) 과세 불확실성

21

IV. 신탁 관련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다. 주요 개정방향

(1)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선택을 허용

○ 소득 발생 시마다 소득을 수익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유보한 후 향후에 배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탁 운용의 효율성 제고

(2) 조세회피 방지책

□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 부과

○ 수익자가 없거나 위탁자가 신탁을 사실상 통제·지배하는 경우 등에는 위탁자가 자신의 소득 분산에 신탁을 활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과세

22

IV. 신탁 관련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2. 주요 개정내용 : 개정 후 소득세 및 법인세 신탁세제

가.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 - 소득세법 제2조의3 신설, 법인세법 제5조 등

(1)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함 - 소득세법 제2조의3 제1항,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2)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법인세법 제5조 제2항)

□ 아래 ① ~ ④의 경우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을 선택할 수 있음

① 「신탁법」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② 「신탁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권 및 수익의 유보·배분액 결정권을 갖는 경우 등을 시행령에 규정할 의도였으나, 아직 시행령 규정 없음.

□ 과세방식: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수탁자에게 과세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배분시 수익자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23

IV. 신탁 관련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3) 위탁자 과세범위 확대 - 소득세법 제2조의3, 동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제5조 제3항, 동 시행령 제3조의2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과세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함.

①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것

②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위탁자의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24

IV. 신탁 관련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나.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

(1) 법인의 수익권 양도

법인이 신탁 수익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2) 개인의 수익권 양도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 동 시행령 제159조의3

○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봄. 그러나, 다음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① 신탁업자가 발행한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 또는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으로서 해당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③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④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5

IV. 신탁 관련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설정시에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다목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 반대해석하면,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대가의 수수(收受)가 없는 만큼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4) 신탁 수익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4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6,000만 원 + (3억 원 초과액 x 25%)

26

IV. 신탁 관련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다.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 보완(법인세법 제73조의2)

라.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법인세법 제75조의10, 11)

- 수탁자의 지위, ○ 수탁자의 납세의무, ○ 수익자의 보충적 납세의무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 분배시 배당으로 간주, ○ 요건 미충족시 과세방법

마.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소득세법 제17조)

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규정(법인세법 제75조의12)

- 설립, 해산, 사업연도, 납세지

사.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법인세법 제75조의13)

아.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법인세법 제18조의23, 제75조의14)

27

IV. 신탁 관련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자.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 분할에 대한 규정(법인세법 제75조의15)

차.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법인세법 제75조의16)

- 수탁자 변경시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

카.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법인세법 제75조의17, 18)

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신고(법인세법 제109조)

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 신고(법인세법 제109조의2 신설)

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특례(법인세법 제111조)

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구분경리(법인세법 제113조)

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법인세법 제57조의2)

28

IV. 신탁 관련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3. 향후 과제

가. 수익자 원칙 조항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표현을 달리할 필요가 있나?

○ 소득세법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2020. 12. 29. 신설]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③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2.>

○ 일본 소득세법 제13조 = 일본 법인세법 제12조(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및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비용의 귀속) ④ 신탁의 수익자(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한다)는 당해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비용은 해당 수익자의 수익과 비용으로 간주하여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집단투자신탁, 퇴직연금등신탁 또는 법인과세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및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IV. 신탁 관련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의 개정내용과 향후과제

나. 법인과세신탁의 향후 과제

A. 수탁자에게 법인과세신탁 선택권을 준 것이 타당한가?

(1) 개정신탁세제에서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신탁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과세신탁 선택권을 주었음.

(2) 법인과세신탁의 본래 취지

- ① 신탁이 법인 유사의 vehicle이기 때문에 법인과 의 정합성, 과세의 공평을 고려한 경우
- ② 신탁이익에 대해 과세해야 할 수익자가 없는 경우의 대체조치로서 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 ③ 과세이연 등의 조세회피 방지의 관점에서 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3) 주요 외국 어디에도 법인과세신탁에서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없음.

(4) 법인과세 신탁세제가 제대로 자리잡는지 향후 운영과정을 지켜보아야 겠지만, 선택권을 삭제함이 마땅함.

30

IV. 신탁 관련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B. 모든 법인세법 규정이 예외 없이 법인신탁과세에 적용되는지도 앞으로 지켜볼 과제임.

C. 목적신탁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법인과세신탁의 조건으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①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

②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가 아닐 것

(2) 법인과세신탁 중 목적신탁은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3) 앞으로, 목적신탁에 대하여는 위 ①의 요건을 삭제하여야 함.

31

IV. 신탁 관련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다. 위탁자 과세의 향후 과제

(1) 개정신탁세제(소득세법 제2조의3, 동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제5조 제3항, 동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외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위탁자에게 과세한다.

①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것

②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위탁자의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2) 위 ② 요건 때문에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하여 위탁자과세신탁을 적용할 수 없음.

원본 수익자를 위탁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더라도 위탁자가 얼마든지 신탁을 통제지배할 수 있는데, 왜 원본 수익자가 위탁자 자신인 경우에만 위탁자 과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임.

(3) 미국의 grantor trust나 일본의 위탁자 과세신탁에서도 위 ②와 같은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

(4) 앞으로 위 ② 요건은 삭제함이 마땅함.

32

V.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1. 개정전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주요 내용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중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할 것인가?

가. 부가가치세법상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고, 예외적으로 수탁자임.

○ 예외:

- ▶ 채무이행을 위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 도시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로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종전 판례의 입장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의 신탁업무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지만,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이다. ⇒ 자익신탁이면 위탁자, 타익신탁이면 수익자

33

V.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다. 종전 판례에 대한 비판

(1)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소득과세와 달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지, 그 거래를 통하여 얻은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이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당연히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소유 또는 지배하는 지위 즉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그 거래로 인한 궁극적인 이득을 그가 얻을 필요는 없다.

(3) 신탁의 수탁자는 법률상 완전한 소유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자기 명의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

(4) 세무행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에 관련된 모든 법률상·사실상의 행위를 하면서 관련 자료 및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인 만큼, 그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34

V.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2.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35

V.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3. 부가가치세법 개정

가. 2017. 12. 1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2. 19.>

나. 위 개정규정에 대한 의문점(비판)

○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인가, 아니면 판결과 달리 가겠다는 의도적인 정책적 규정인가? 후자라면 이유가 무엇인가?

○ 용역의 공급시에는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36

V.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4. 개정 부가가치세 신탁세제

가.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부가가치세법 제3조)

(1) 원칙 : 수탁자(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 제58조의2, 제8조 제6항)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납세의무 부과
 - ▶ 수탁자가 고유업무를 처리하는 거래와 신탁재산을 처리하는 거래의 경우를 부가가치세법상 다른 납세의무자로 간주하고, 또 여러 개의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간주.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봄
-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 가능
-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37

V.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2) 예외 : 위탁자(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동 시행령 제5조의2)

- ①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 ②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를 수탁받아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 ㉡ 수탁자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 ㉢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38

V.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나. 공동수탁자의 연대납세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다. 수익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1항

▶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라.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2항

마. 위탁자 지위 이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동 시행령 제21조의2

(1)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②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 등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39

V.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있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4호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사. 매입세액 공제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동 시행령 제75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자와 다르게 적힌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1)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1호)

(2)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2호)

40

V.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3. 향후 과제

가. 수탁자를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로 한 것이 신탁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인가?

○ 개정 신탁세제에서 수탁자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가 됨으로써 신고납부 및 이를 위한 기장 등 부담이 늘어 남.

○ 그러나, 신탁 수수료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감내할 수 있는 부담이라고 생각함.

나. 매출세액 납부와 매입세액 공제간의 불균형 문제

(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4호), 위탁자가 사업자든 아니든 위탁자(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없고 수탁자(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없음.

(2)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예전에 제3자로부터 매입할 때에 매입세액을 지급하였을 수 있음. 이 때 위탁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았을 수도 있음.

41

V.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3) 개정 신탁세제에서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결과, 위탁자가 종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이번에 재화를 수탁자에게 이전하였다면 위탁자는 매출세액 부담 없이 매입세액 공제만 받은 결과가 되고, 반대로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 없이 매출세액만을 부담하게 되어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 즉, 매입세액 공제는 위탁자가 받고, 매출세액 납부는 수탁자가 하게 되는 현상이 초래됨.

(4) 어떻게 할 것인가? ⇒ 2안에 찬성. 현실 > 이상

① 1안 : 위탁자의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 공제액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추징

② 2안 : 현 상태 묵인.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율에 맡김.

42

V.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다. 수익권자의 수익권 양도

(1)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규정은 있지만(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수익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권리도 재화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권리'는 그 자체로 소비되거나 아니면 생산과정에 기여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권리를 의미하지 모든 권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순수 채권 등은 제외됨. 따라서, 수익권의 양도를 순수한 채권의 양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임.

(3) 주식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듯이, 수익권을 수익증권의 형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4) 수익권의 양도도 원칙적으로 채권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봄. 그러나,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듯이(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 단서),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신탁수익권의 양도는 앞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43

VI.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1. 신탁 관련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제

가. 규정 미흡

○ 예컨대,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문제에 관한 규정 결여

Ex.) 소순무, “누구도 모르는 유언대용신탁 세금”, 조세일보 2016. 2. 18.

“...무엇보다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과세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에 의하여 상속인이 받게 될 수익 및 신탁원본에 대해선 세법상 명확한 과세근거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나. 개정 필요성

○ 상속이나 후견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신탁의 활용가능성 증가

○ 조세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

“...이대로 방치한다면 신증신탁에 대한 과세대란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상품으로 판매한 금융기관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조속히 입법에 착수하여야 한다. 어느 누구도 모르는 유언대용신탁 세금 문제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 위 칼럼 중에서

44

VI.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2. 신탁 관련 개정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주요 내용

가. 신탁과 증여세

(1) 과세대상

○ 신탁의 설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법률상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서 수탁자로 이전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위탁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임. ⇒ 조세법 > 사법(私法)

○ 그리하여,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

45

VI.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2)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가) 원칙 ⇒ 조세법 이론, 현실 > 과세이연, 조세회피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날임.

▶ 일본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 즉 신탁계약의 효력발생시기가 증여시기임.

(나) 예외

①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②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③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46

VI.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나. 일반적인 신탁과 상속세 ⇒ 조세법 > 사법(私法)

(1) 위탁자 사망시의 상속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 피상속인이 수탁자에게 신탁한 재산은 법률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이지만 그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킴.

○ 그러나, 위탁자가 타익신탁을 설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이미 타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수익권은 위탁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한편, 피상속인이 타인이 설정한 타익신탁의 수익자인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수익권 상당 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그 수익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됨.

47

VI.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다.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9조

○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사후에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 생전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비로소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가리킴(신탁법 제59조 제1항).

○ 그동안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것을 과세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개정신탁세제에서는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음.

○ 즉, 유언대용신탁은 상속 개념에 들어가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라목), 유언대용신탁에 의해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는 수유자에 포함됨(상증세법 제2조 제5호 다목). 이것은 유언대용신탁이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하기로 한 것임.

48

VI.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라.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제9조

(1) 원칙

○ 수익자연속신탁은 수익자 사망시에 당해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자가 새로이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자에게 수익권이 귀속되는 형태의 신탁임(신탁법 제60조). 예컨대, “위탁자 A가 그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자신(A)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하고, 자신의 사후부터 배우자인 B의 생존 동안에는 B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하고, B의 사망 이후에는 아들인 C에게 신탁원본 및 수익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신탁과 같음.

○ 그동안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해 어떻게 과세되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개정신탁세제에서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명문화하였음.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대부분을 해석에 맡기고 있음.

○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 개념에 들어가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마목),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해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는 수유자에 포함됨(상증세법 제2조 제5호 다목). 여기에서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해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란 ‘선행 수익자의 사망에 의해 수익권을 현실적으로 취득한 후행 수익자(위 예의 B)’를 가리킴.

49

VI.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2) 위탁자 사망시의 과세 문제

(가) 위탁자 사망 당시의 수익자(위 예의 B)는 수유자에 해당하고, 이 때 후행 수익자(C)가 가지고 있는 원본 수익권 및 수입 수익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위탁자가 남긴 상속재산에 포함됨. 경우를 달리하여, 위의 예에서 위탁자 생존 중에도 B가 수입수익권자였고 그에 따라 B가 이미 수입수익을 받았다면 이것은 증여재산으로서 이미 과세되었기 때문에 위탁자 사망시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B가 현실적으로 수입을 받지 않았더라도 B의 수입수익권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A의 사망시까지의 증여시기가 도래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여 A의 상속재산에서는 제외됨), C가 아직 현실적으로 수령한 바 없는 원본수익권 및 수입수익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 본문).

(나) 후행 수익자(C)는 아직 수익권을 현실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유자가 아님. 따라서 후행 수익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위탁자에게서 증여받은 재산 없이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신탁재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그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의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0이므로).

50

VI.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다) 이 경우에 선행 수익자(B)는 수입수익권을 취득할 뿐인데, 그가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가 수입수익권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자신이 취득하지 않은 부분(C의 원본수익권 등)에 대해서까지 상속세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

- ① 제1설: 위탁자(A) 사망시에 전체 신탁재산에 대해 선행 수익자(B)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나중에 선행 수익자 사망시에 다시 후행 수익자(C)에게 전체 신탁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함.
- ② 제2설: 위탁자(A) 사망시에 선행 수익자(B)에게 수입수익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선행 수익자(B) 사망시에 후행 수익자(C)에게 원본수익권 등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함.
- ③ 제3설: 위탁자 사망시에 선행 수익자(B)에게 수입수익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후행 수익자(C)에게 원본수익권 등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다목, 제9조 제1항, 제3항의 문언에 비추어보면 현행 상속세법은 위탁자가 원본수익권을 선행 수익자에게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이전시키고, 선행 수입수익자의 사망시에 선행 수입수익자가 후행 수익자에게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보임.

○ 따라서, 부득이 제1설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51

VI.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3) 선행 수익자 사망시의 과세 문제

○ 수익자연속신탁의 선행 수익자(위 예의 B)가 사망함에 따라 후행 수익자(C)가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에 후행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권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선행 수익자, B)의 상속재산에 포함됨(상증세법 제9조 제3항).

○ 이 때, 선행 수익자(B)의 수입수익권은 선행 수익자의 사망에 따라 소멸하고 후행 수익자에게 승계되지 않음. 즉, 후행 수익자는 위탁자의 신탁 설정 당시의 최초 의사에 따라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선행 수익자가 가지고 있던 수익권을 상속(승계)받는 것이 아님.

▶ 신탁법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선행 수익자(B)가 위탁자(A)보다 먼저 사망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할 것임.

52

VI.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3. 향후 과제

가. 수익자연속신탁의 상속세 과세방식 재고 필요성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신탁세제에서는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원칙만 명시한 채, 세부내용은 규정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문언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행 수입수익자(위의 예에서 B)는 그가 취득한 수입수익권의 범위를 넘어서, 후행 수익자(C)의 원본수익권 등에 대하여도 상속세 부담을 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이것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는 상속세법의 기본원리에 어긋남.

○ 앞으로, 선행 수입수익권자는 그가 취득한 수입수익권의 한도 안에서만 납세의무를 지고, 원본수익권자가 원본수익권에 상응하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임.

53

VI.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나. 수익자 지정변경권자의 수익자 지정 및 변경 시의 과세 규정 미비

□ 대개는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면서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신탁설정 단계에서는 수익자를 정하지 않고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만 정하고, 이렇게 수익자 지정권을 가진 자가 추후에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수익자 변경권을 가진 자는 기존의 수익자를 다른 수익자로 변경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수익자 지정권자나 변경권자가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위와 같은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없이 해석론에 맡기고 있음.

□ 수익자 지정권자나 변경권자가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54

VII. 결론

1. 신탁은 다양하고 유연하다.

○ The Trust is the greatest and most distinctive achievement performed by Englishmen in the field of jurisprudence. - Frederic Maitland

○ The purposes for which trusts can be created are as unlimited as the imagination of lawyers. – Austin W. Scott

2. 신탁은 미완(未完)의 영역이다.

3. 신탁산업은 앞으로 계속하여 크게 성장할 것이다.

4. 민사신탁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55

VII. 결론

□ 민사신탁의 구체적인 사례

가. 복지형 민사신탁

나. 유언대용신탁

다. 후계유증형 수익자연속신탁

라. 재산관리·처분신탁

마. 가산승계형 민사신탁

56

토 론 문

신탁세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

| 손영철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

존경하는 이진오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을 작성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1년 신탁세제의 대변혁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신탁세제를 평가한다거나 이들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발제문에는 현행 신탁세제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현행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어서, 향후 신탁세제를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하에서는 신탁세제와 관련한 저의 종전 논문과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신탁세제를 평가하고, 아울러 교수님의 견해와 관련하여 동의하는 부분과 상이한 견해를 밝히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신탁소득세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신탁의 경제적 실질은 단순한 도관(명의신탁이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배하는 수동신탁인 자익신탁의 경우)에서부터 상법상 주식회사(유동화신탁, 사모투자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신탁세제는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탁을 단순히 도관으로 보고 과세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수탁자 지위를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신탁소득세제 뿐만아니라 신탁재산의 출연 및 수익권의 양도에 대한 과세 그리고 신탁의 부가가치세 과세 등 신탁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쟁점규정이 신탁의 다양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과세상 여러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예컨대, 쟁점규정으로는 수익자가 다수이고 수익권이 자유롭게 양도되는 신탁에 대해서는 적절한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수익권이 선순위, 후순위 수익권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쟁점규정은 수익권이 단순히 양적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유동화신탁이나 2011년에 새롭게 도입된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수익권이 질적으로 분할되는 신탁의 설정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쟁점규정은 명의신탁이나 자익신탁인 수동신탁의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한 것을 뿐, 타익신탁에 있어서의 경제적 실질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식은 타익신탁이지만 실질은 자익신탁인 신탁을 설립하고 재산을 분산하여 소득의 누진세 구조를 무력화 하는데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쟁점규정은 신탁재산의 출연이나 수익권의 양도와 관련한 과세상 해석론에 반영되어(도관론에 따르면 과세할 수 없음), 경제적 실질이 상법상 주식회사에 가까운 신탁에 있어서는 과세상 많은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신탁소득세제의 개편은 종전 신탁소득세제가 신탁의 경제적 실질을 단순한 도관으로 보던 시각을 버리고 신탁의 다양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새롭게 법인과세신탁과 위탁자과세신탁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신탁의 과세에 있어서도 도관론적 시각이 반영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4항을 삭제하고 단순히 투자이익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도 올바른 방향의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과제와 관련하여, 교수님께서서는 수탁자가 법인과세신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인과세신탁을 도입한 본래의 취지나 외국의 입법례를 감안하면 타당하지 않으며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30p). 아울러 위탁자과세신탁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의 2 제4항 제2호는 삭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32p).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표 1] 신탁유형별 과세방식¹⁾

유 형	납세의무자	대상 신탁	과세방법
수익자와 세신탁	수익자	원칙(일반적인 경우) - 특정금전신탁 등	도관이론(소득원천별 과세)
위탁자와 세과신탁	위탁자	실질적 수익자가 위탁자인 경우	상동
법인과 세신탁	1단계: 신탁재산 2단계: 수익자	수익증권발행신탁, 목적신탁 등으로서 수탁자가 선택하는 경우	실체이론(법인의제○) ※ <u>pay-through 방식에 의해 이중과세 완전 해소</u>
집합투자기 구과세신탁	수익자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공 모, 사모 포함)	실체이론(법인의제×) - 수익증권 환매로 인한 이익 : 금융투자소득 - 결산분배금 :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은 제외)

한편, 신탁설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다목에서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경우에도 신탁설정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마치 원칙적으로 신탁설정시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대가의 수수가 없는 만큼 과세요건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26p).

그러나 이 법 입법 전에도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고 해석하여 왔고,²⁾ 법인과세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출연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종전까지 해석론에 의해 과세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버리고 이번 입법을 통해 신탁재산의 출연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면서 예외적으로 위탁자와세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입법의 취지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야 교수님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2. 신탁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수탁자의 법률적 지위를 무시하는 쟁점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에 영향을 미쳐 많은 문제를

1) 기획재정부, 020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20.7.22. 14면 수정

2) 재산-1963, 2008.7.28.

야기하였습니다. 당초 실무계는 신탁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도관론적 해석론에 근거하여 위탁자(또는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실무를 하였습니다. 대법원도 개발사업을 주도한 능동신탁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인 위탁자로 보았고,³⁾ 타익신탁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수익자로 판단하였습니다.⁴⁾

이처럼 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과세청의 해석과 판례에 근거하여 과세실무가 이루어져 왔으나 쟁점규정이 신탁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효과(수탁자 귀속)와 세법적 효과(수익자 귀속)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례가 축적되면서 대법원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2021년 세법개정에서 신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예외적으로 위탁자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탁의 운영방식을 존중하여 납세의무자를 유연하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탁의 다양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토론자 역시 이번 입법에 대하여 찬동하는 바입니다.

3. 신탁의 상속·증여와 관련하여

2021년 세법개정에서 신탁이익의 증여 및 상속과 관련하여 다수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조문구성을 합리화 하면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증여세 과세시기와 관련하여 시행령의 조문구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1항 제3호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3)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4)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나.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종전 조문에서 새롭게 나뉘어 신설하였습니다. 신탁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즉, 위탁자과세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아니라 위탁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신탁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실제 수령하는 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탁이익의 상속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 위탁자 사망시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로 과세하고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⁵⁾ 상속이라는 용어의 범위에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포함시키고⁶⁾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를 수익자의 하나로 나열함으로써⁷⁾, 위탁자 사망시점의 상속세 과세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아울러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조문구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신설 2020. 12. 22.>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획재정부, 2020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0.7.22. 47면

6) 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라목

7) 상증세법 제2조 제5호 다목

종전과 달리 제9조 제1항 단서문단의 조문이 대폭 변경되었는데, 종전 단서문단에 의하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가 도관론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보다 명확히 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제3항은 새롭게 입법된 것입니다. 제3항의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이하에서는 아래의 사례를 전제로 이 규정의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위탁자가 위탁자 생존 중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고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는 배우자를 수입수익의 수익자로 하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큰딸이 수입수익의 수익자로 그리고 큰딸이 사망하면 늦둥이 아들이 원본과 수입수익의 수익자로 하는 유언대용의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님께서는 수익자연속신탁에서의 수익자의 상속세 부담범위와 관련하여 3가지 설이 있음을 전제한 다음 현행 세법의 구성상 그 중 제1설인 수익자 각각이 신탁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지어야 한다는 제1절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p51). 제1설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위탁자 사망시점에 위탁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선행 수익자인 배우자 1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후행 수익자인 큰딸이 신탁재산 전부에 대해 다시금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설은 현재 일본이 수익자연속신탁의 상속세 과세범위를 정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토론자의 소견으로는 현행 세법이 상속이라는 용어의 범위에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포함시키고 있고,⁸⁾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를 수익자의 하나로 나열함으로써⁹⁾, 위탁자 사망시점의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¹⁰⁾ 위탁자 사망시점에 후행 수익자가 받을 재산이 0이기 때문

8) 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라목

9) 상증세법 제2조 제5호 다목

10)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도 수익자연속신탁의 각 수익자에게 귀속될 수익권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나아가 직전 수익권자 사망 시 승계수익권자에 수익권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제47면). 반면 2020 세법개정안 문답자료는 선행수익자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선행수익자 사망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후행수익자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제16면). 상세본과 문답자료의 내용이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에 후행 수익자는 위탁자 사망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p50), 위탁자의 사망은 그 시점에 후행수익자의 수익권이 철회불능의 권리로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탁자 사망시점에 후행수익자의 수익권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재산이 있다고 토론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 제3항에서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이란 위 사례에서 배우자 사망시 후행 수익자인 큰 딸이 갖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즉 수입수익권의 가액을 뜻하고 이는 수입수익의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 큰 딸의 수입수익권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부담을 지어야 한다고 읽힐 뿐, 제1절과 같이 신탁재산 전체를 후행 수익자인 큰 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라는 의미로 읽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탁자 사망시점에서의 상속세는 수익자연속신탁의 각 수익자에게 귀속될 수익권의 가액을 한도로 각자가 부담하여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수익자가 연속되는 시점에서는 후행수익자의 수익권의 가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후행수익자가 다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또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 론 문

신탁세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

| 김 병 일 교수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세무학전공) |

I. 서언

개정신탁법이 도입(2011.7.25.)된지 9년만에 정부는 신탁업의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의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2020.7.22. 발표, 2020.8.31.에 소득세법(지방세법은 2020.9.25.)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2020년 12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세법 개정안에서 신탁법 전면 개정에 대응한 신탁세제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시의 적절한 주제인 신탁세제에 대하여 개정 배경, 설계·운영시의 고려사항, 기본이론, 신탁관련 소득세제·법인세제·부가가치세제·상증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등 신탁세제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발표를 해주신 이진오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토론의 기회를 주신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Ⅱ. 신탁과세제도의 설계·운영시 고려사항

신탁은 계약(위탁자와 수탁자), 유언(위탁자), 신탁선언(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관리인))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을 통하여 성립한다. 신탁의 구성요소는 신탁설정의사(trust intent), 신탁재산, 수익자의 확정이나 신탁의 목적,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이고, 이 중 신탁설정의사, 신탁재산, 수익자는 확정될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은 신탁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편할 경우 동 제도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법과 조세법 사이의 관계설정 내지 조화문제, 각 세목상 납세의무자의 일치 여부, 신탁제도의 기능 및 이상(원칙)과 현실(관행) 간의 균형(발제문 pp.7~10) 등 신탁제도와의 정합성은 물론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기존 금융시스템 이외의 다양한 자산 및 자금운용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등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되며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과세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 신탁 관련 당사자는 물론 신탁재산 그 자체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위탁자의 신탁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자익신탁, 타익신탁, 자기신탁, 목적신탁, 단순신탁, 복합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담보신탁, 부동산신탁, 공익신탁 등 신탁의 유형별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목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신탁의 설정, 운용, 변경, 종료 등 신탁단계별 과세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신탁관련 조세의 합리적인 징수방안은 물론 국제조세분야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신탁 관련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

1. 법인과세신탁

현행 신탁세제에 비하여 2020년 신탁세제 개편안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수익자에 대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탁자 단계에서 수탁자에게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소위 ‘법인과세신탁’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즉 ①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등에 해당할 것, ②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 ③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가 아닐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권 및 수익의 유보배분의 결정권을 갖는 경우 등의 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법인 과세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탁자(그 상속인 포함)를 납세의무자로 하던 것을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에도 위탁자 과세를 허용함으로써 위탁자 과세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신탁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과세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신탁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탁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금번 신탁세제 개정안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나,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법인과세신탁을 선택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간의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법인세법 제5조에 따르면 제1항에서 수익자 과세원칙을 제2항에서 법인과세 신탁재산 적용범위를 제3항에서 위탁자 과세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탁법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²⁾의 경우 법인과세신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수탁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이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할 것이나, 위탁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되어 위탁자의 상속인이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신탁법 제10조 제3항)에는 위탁자에게 과세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과세신탁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신탁법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므로 법인과세신탁의 적용요건 중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어 법인과세신탁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발제문 p.31).

넷째,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

1)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제4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 아직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신탁유형의 변경을 통하여 수익자를 정해두는 수익자신탁으로 변경하거나 수익자신탁을 목적신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신탁법 제88조 제4항).

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법인과세 수탁자)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법인세법 제2장의2)을 법인세법 제1장(총칙) 및 제2장(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각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의제되고 있다(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이와 같이 법인과세 신탁재산과 법인과세 수탁자가 엄격히 구별되고 있는 바, 법인세법 규정상 법인과세 신탁재산 및 법인과세 수탁자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이 이들에게 어느 범위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발제문 p.31 참조).

다섯째, 신탁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소위 목적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목적신탁의 존속기간을 한정하지 않아 영구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처분되지 않는 신탁재산이 발생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신탁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위탁자과세

신탁세제 개정내용에 따르면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을 사실상 통제·지배하는 경우 등 위탁자를 실질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자신의 소득 분산에 신탁을 활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위탁자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신탁제도의 특징은 다른 법적실체보다도 다양성 및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고 신탁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하여 조세회피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신탁과세구조는 다른 제도에 비하여 더욱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탁제도의 출발점이 위탁자이므로, 위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력을 통한 소득분산과 누진구조의 탈피 등 조세회피시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탁자와 관련된 과세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하여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탁의 설정자와 신탁재산의 이전자가 다른 경우 등 신탁의 운용 등에 직·간접적으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이익을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도 위탁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신탁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영국의 사전소유자산(pre-owned assets)신탁처럼 위탁자가 자녀 등에게 증여한 후 증여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이용 및 점유를 위탁자가 행사하는 경우에 신탁자산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자녀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2011년 신탁법에 도입된 위탁자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신탁유형을 살펴보면 유언대용신탁, 자기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수익자 지정권 및 변경권 유보부신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신탁 유형은 위탁자의 재량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이들 신탁에 적용될 수 있는 위탁자과세신탁의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설정하는 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 등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발제문 p.32).

Ⅳ.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써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수익자과세원칙³⁾에서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수탁자과세원칙으로 전환하였으나, 정부는 다시 2017년 위탁자과세로, 2020년 세법 개정에서는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계약 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하였다.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통제 권한이 위탁자에게 있는 경우와 신탁의 유형, 신탁계약의 내용 및 위탁자와 수탁자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대로 위탁자로 납세의무자로 하였다. 이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이론적 측면과 함께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른 혼란을 축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법인세)와는 달리 거래외형에 과세하는 거래세 성격에 부합한다는 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신탁재산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 신탁의 운용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신탁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건물은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토지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수익자 과세원칙이 적용되므로 위탁자가 각각 공급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럴 경우 토지와 건물의 공급주체가 달라지므로, 즉 토지는 위탁자, 건물은 수탁자가 되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안분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함에 따라 향후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자금을 신탁계약 해지시에도 상

3)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당액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유보금'으로 신탁회사에 존치시킬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리고 수익권의 경우 원본수익권이나 수입수익권은 수익자에 귀속된다. 따라서 수익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면 수익자가 사업자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수탁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면 '위탁자 → 수탁자'의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 → 수익자'의 재화의 공급이 별도로 존재하여야 하는데,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최초로 수익권이 발생하는 단계인 수익자를 설정할 때에 '위탁자 → 수익자'로 재화의 공급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면 최초로 A 수익자에게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것이므로 'A 수익자 → B 수익자'의 형식으로 수익권의 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A 수익자에게 없는 재화가 B 수익자에게 이전될 수 없기 때문에 수익권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오게 된다. 수익권의 양도는 채권과 같이 단순히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의 이전으로 그 자체로써 소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수익권의 과세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수익권의 양도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한다.

V. 신탁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

1. 신탁의 존속기간

우리나라 신탁법은 신탁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수익권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데 신탁행위로부터 장기간을 유지한다면, 그 기간 동안 신탁재산은 구속되어 물자의 유통을 저해하여 국민경제상의 이익에 반하게 된다. 그 결과 신탁행위는 상당기간을 넘어 귀속할 수익권에 관하여는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세법상 신탁 당사자로 하여금 조세회피를 기도할 가능성을 내포함으로써, 과세당국은 이를 위한 조세회피규정을 강화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세법이 신탁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국의 영구구속금지의 원칙(the rule against perpetuities)을 근간으로 하여 신탁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영구구속금지의 원칙은 일정한 허용된 기간 이상으로 어떤 권리의 귀속이 연기되는 것을 금지하고 신탁재산의 처분을 무효로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배경은 위탁자인 개인이 사후에 생존자(living in being) 또는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신탁재산)을 위탁

자의 본지와 달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신탁설정 후(설정기간 동안이나 설정기간 종료)에 신탁재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생존자에게 이전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위탁자의 영구적인 신탁설정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영국은 이 원칙을 영구구속 및 유보에 관한 법률(Perpetuities and Accumulations Act)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을 개정하여 현재에는 영구구속 및 유보에 관한 법률 2009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구속기간(perpetuity period)을 125년으로 규정하여 있고,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영구구속 및 유보에 관한 법률 2009 제5조 제2항에서는 동법 제1조 제2항에서 제6항 상황은 신탁계약서(instrument)에서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있다(Perpetuities and Accumulations Act 2009 § 5)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을 근거로 하여 신탁원본의 일부로서 유보될 수 있는 소득을 21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을 영구구속 및 유보에 관한 법률 1964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원칙과 신탁존속기간은 신탁재산의 영구적 구속을 방지하여 신탁의 수익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규정이고, 신탁유보이익이 조세회피의 도구로 활용될 개연성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이 원칙의 기간은 유언자(testator)가 자신의 손주들(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증여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한다)에게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고안되었다. 또한 이 원칙의 명시는 유언자의 실질적인 증여 전에 유언자에 의한 기간연장을 제한하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영국은 이 규정을 통하여 신탁재산의 장기간 구속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신탁유보이익을 통한 조세회피방지 및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영구구속금지의 원칙⁴⁾의 도입을 통하여 신탁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조세회피시도를 차단함과 동시에 일정 법적 안정성 및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세법이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유류분과의 관계

민법은 유류분의 보전방법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청구권을 수여하고 있다.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다. 따

4) 일본의 경우에는 후계유증형의 수익자연속신탁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비하여 신탁계약체결시 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류분 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나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유류분권리자는 더 이상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최근 유언대용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최근 지방법원의 판례에서 망인이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은 성질상 무상이전이므로 민법 제1114에 해당하거나 상속인을 수탁자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8조, 제100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우선 위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인 은행이고,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은 상속이 개시되기 1년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수탁자인 은행이 위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신탁재산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⁵⁾

3. 수익자연속신탁

가. 수익자연속신탁의 범위

신탁세제 개정내용에 따르면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수익권을 취득하는 자를 수익자라고 하고 동 신탁은 위탁자 또는 직전 수익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점을 감안하여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속세법 제2조 및 제9조의 개정에서 그치고 있다. 그런데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익자지정권의 유보가 가능하다. 즉 신탁설정 당시에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신탁행위로 이를 지정할 권한인 수익자지정권을 가진 자만을 정하여 두는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신탁 설정 당시에 지정한 수익자를 변경할 권한인 수익자변경권을 가진 자를 두는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수익자연속신탁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상속법상 수익자연속신탁의 범위를 신탁법상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다.⁶⁾ 따라서 상속세법에 수익자지정권 등도 수익자연속신탁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나11380판결.

6)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3 제1항. 수익자 연속형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 제91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 신탁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수익자지정권 및 수익자변경권 유보부 신탁, 기타 이와 유사한 신탁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수익자연속신탁의 상속세 과세방식

사례 : “위탁자 A가 그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자신(A)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하고, 자신의 사후부터 배우자인 B의 생존 동안에는 B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하고, B의 사망 이후에는 아들인 C에게 신탁원본 및 수익을 지급한다”

위 사례에서 상속세 과세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발제문 pp.49~51). 즉, 선행 수익자(B)는 수입수익권을 취득할 뿐인데, 그가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가 수입수익권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자신이 취득하지 않은 부분(C의 원본수익권 등)에 대해서까지 상속세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해석상 논란에 대한 견해가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 ① 제1설: 위탁자(A) 사망시에 전체 신탁재산에 대해 선행 수익자(B)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나중에 선행 수익자 사망시에 다시 후행 수익자(C)에게 전체 신탁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함.
- ② 제2설: 위탁자(A) 사망시에 선행 수익자(B)에게 수입수익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선행 수익자(B) 사망시에 후행 수익자(C)에게 원본수익권 등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함.
- ③ 제3설: 위탁자 사망시에 선행 수익자(B)에게 수입수익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후행 수익자(C)에게 원본수익권 등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함.

다. 수익자연속신탁에 따른 세대생략이전세제

세대생략이전과세는 상속과세의 1세대 1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세대를 생략하여 재산을 승계받는 자가 대부분 손자녀 등이며,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행위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산을 승계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한 관리문제 및 위탁자(피상속인)의 사후에 위탁자의 의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신탁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신탁제도는 다른 재산승계방식보다도 피상속인의 사후에도 전문성을 지닌 신탁을 통해 일정한 상속재산관

리와 상속인이나 수익자 등에게 안정적인 재산승계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탁유형 중 수익자연속신탁은 세대생략이전제도를 통하여 보다 유연한 재산승계를 계획할 수 있으며, 수익자들의 상황에 따라 신탁재산 자체를 승계할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을 수직적으로 신탁수익과 신탁원본을 각 수익자에게 분리하여 승계할 수 있는 방식을 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수익자연속신탁은 신탁재산 자체를 사망을 원인으로 직접승계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대생략이전도 가능한 구조이다. 이러한 신탁수익과 신탁원본의 분리이전은 부의 집중적인 승계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제한능력에 따른 승계재산의 관리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손자녀의 교육비지원, 부양의무 등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한다. 하지만, 수익자연속신탁규정은 승계범위나 승계원인이 제한적이고, 신탁재산의 수직적 분리이전이 불가능하여, 전술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익자연속신탁의 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유연한 재산승계를 위하여 세대생략을 통한 재산승계를 위하여 신탁이익(신탁재산)의 분리를 통하여 직접승계방식뿐만 아니라 간접승계방식⁷⁾에도 적용가능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제상 이를 도입할 때 조세중립성과 효율성 측면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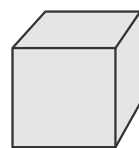
4. 신탁이익의 평가방법, 공익신탁 등 기타 사항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원본수익권과 수입수익권 이외 우선수익권과 후순위수익권의 평가문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공익신탁 과세제도, 사업신탁 과세제도 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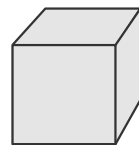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7) 세대생략이전과세상 간접승계는 이전자의 승계원인이 아닌 신탁종료사유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 후에 발생하는 간접적인 승계사유에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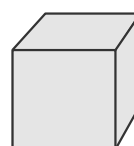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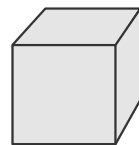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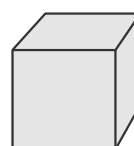
MEMO



MEMO



MEMO



제20회 한국세무포럼 <비매품>

인쇄일 2022년 5월 16일

발행일 2022년 5월 17일

발행인 원 경 희

발행처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팀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서초3동 1497-16)
전화 (대표) 521-9544